

Local Language Labeling Mandatory in Myanmar

미얀마의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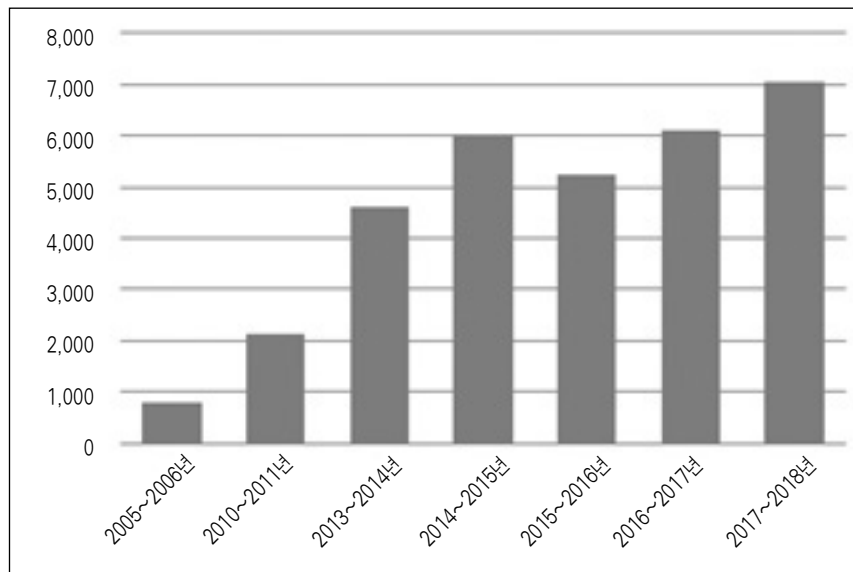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소비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

미얀마는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소비재의 유통 및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미얀마 정부는 2017년 Consumer Information and Complaints Centre를 개설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검토했다.

[그림 1] 연도별 생활소비재 수입 증가 (단위 : US\$ 100만)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II. 규제 동향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 (Myanmar 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18년 10월 26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진 1) 현지어 라벨 부착 공지(1/2019)



(자료 : 미얀마 소비자보호원)

모든 수입제품에 미얀마어로 된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다.

현지어 표시 의무화 시행 시기는 2019년 4월 26일로 발표됐으나 현지어 라벨 부착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이에 대한 기업들이 반발로 인해 연기된 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설명서를 제품에 부착하거나 전단지 등을 따로 첨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얀마 국회는 2014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을 개정된 신 소비자보호법을 2019년 2월에 승인하였으며,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미얀마어로 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18조는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18조는 상품명, 성분, 사이즈, 수량, 보관법, 사용설명, 유효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을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와 외국어로 표시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상품에 성분, 사이즈, 보관법 등 표시 여부를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검사할 예정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2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짜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사업 라이선스 철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Ⅲ. 미얀마 소비자보호법의 라벨표시 관련 규정

1. 제18조에 따라 상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상표
- 상품 종류, 규격, 수량 및 순 중량, 보관방법, 사용법
-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제조번호
-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제조업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또는 수입한 후 포장한 기업 주소
- 원재료 및 성분
- 사용 시 주의사항
- 해당 정부기관이 지정한 사항

[사진 2] 현지어 라벨 부착된 수입과자



[자료 : 양곤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2. 상품에 대한 기관의 연구결과 및 보험을 표시한다.
3. 모든 상품 표시를 미얀마어로 표시해야 한다(외국어 병기 가능).

IV. 시장 반응 및 인터뷰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수입 상품에 대한 현지어 라벨 부착의 무화 공지가 나온 후부터 시행 기간이 6개월밖에 안남아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기업들

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대량으로 생산한 약품의 경우, 미리 생산된 수량이 많아 시행기간 연기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D) 회장 U Zaw Min Win은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아 미얀마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품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지어 라벨 부착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얀마 소비자보호부서 차장 U Soe Aung은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에 현지어 라벨 부착 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료 및 농약 판매업자 U Htay Naing은 “대부분의 수입 비료는 사용설명서에 미얀마어 표기가 없어서 오용하는 농민들이 많다”며 “현재 현지어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 판매 시 별도 사용설명서를 부착하거나 구두로 설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V. 결론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영문 또는 수출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았다. 최근 수입산 식품 및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정부의 라벨링 규제로 인해 미얀마 소비자들의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Kay Thwe Oo 미얀마 양곤무역관은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인 2020년 2월까지 세부지침을 기

[표 1] 미얀마 소비자보호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공지

연번	상품	사용법	보관법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ㄱ)	음식				
	(1) 음료 및 잼	○	○	○	×
	(2) 우유 및 유제품	○	○	○	×
	(3) 육류 및 가공품	○	○	○	×
	(4) 달걀 및 가공품	×	○	○	×
	(5) 통조림 제품	○	○	○	×
	(6) 식용유	×	○	○	×
	(7) 인스턴트커피 및 밀크티	○	○	○	×
	(8) 인스턴트라면	○	○	○	×
	(9) 즉석음식	○	○	○	×
	(10) 냉동식품	○	○	○	×
	(11) 생수	×	○	×	×
	(12) 요리에 사용한 색소, 향미 및 조미료	○	○	○	×
	(13) 칠리소스 및 소스	○	○	○	×
	(14) 과자	×	○	○	○
	(15) 아기 영양제	○	○	○	×
	(16) 담뱃잎	○	○	○	×
	(17) 담배	×	○	○	×
	(18) 술	×	○	○	×
	(19) 가공식품	○	○	○	×
(ㄴ)	전자제품				
	(1) 가전제품	○	×	○	×
	(2) 가전제품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	○	×	○	×
(ㄷ)	아기용품				
	(1) 유모차	○	×	○	×
	(2) 보행기	○	×	○	×
	(3) 완구	○	×	○	○
	(4) 요람	○	×	○	×
	(5) 위생용품	○	○	○	○
(ㄹ)	통신용품				
	(1) 유선전화	○	×	×	○
	(2) 무선전화	○	×	×	×
	(3) 휴대폰	○	×	×	○
	(4) 통신용품	○	×	×	○
(ㅁ)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1) OTC 의약품	○	○	○	○
	(2) OTC 연고	○	○	○	○
	(3) 건강기능식품	○	○	○	○
	(4) 전통의약품	○	○	○	○
(ㅂ)	화학물질				
	(1) 농업용 비료	○	○	○	○
	(2) 살충제	○	○	○	○
	(3) 식품용 화학물질	○	○	○	○

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표될 지침을 모니터링해 미얀마어 라벨 제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얀마 소비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얀마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접 미얀마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미얀마 바이어와 라벨 부착 주체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이 우려되나 이는 모든 수입제품에 적용되고, 미얀마는 제조업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후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